

## 상표제도 및 등록요건

김 시 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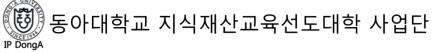
메일: jurist4024@gmail.com



등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 **Con tents**

- 상표 제도의 목적과 개념
- 〉 상표의 기능과 사용
- 3 상표의 등록요건 과 절차
- 4 상표의 동일 유사와 상표의 보호
- 5 상표권의 보호



## Chapter.

제도의 목적과 개념

기출 3회 (상표제도 개괄)



#### ◎ 상표제도의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 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 로 한다(상표법 제1조).

- 상표의 보호 (재산권)
-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 산업발전 도모
- 수요자의 이익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기출 1회 (상표의 정의)



### ◎ 상표의 개념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 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상표의 정의
- 상표의 종류
- 상표의 기능
- 상표의 사용



#### 상표의 정의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을 결합한 것
-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에 색채를 결합한 것

기출 5회 (입체상표, 소리상표)

(1) 기호, 문자, 도형 등









(2) 입체적 형상,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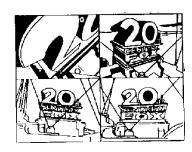


#### (3) 홀로그램





#### (4) 동작상표





#### 상표의 종류

(1) 상표 : 상품에 관한 식별표지 **DIOS** 

(2) 서비스표 : 서비스업에 관한 식별표지

MIRAE ASSET

(3) 단체표장 : 동업자 단체가 사용하는 표장



(4) 업무표장: 비영리업무에 관한 식별표지







#### 2.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 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임.

#### 3. 단체표장의 개념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예] 기장미역

#### 4. 업무표장의 개념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예: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 Chapter.

상표의 기능과 사용

### 1. 본원적 기능

- 자타상품식별 기능
- 출처표시 기능
- 품질보증기능

### 2. 파생적 기능

- 광고적 기능
- 재산적 기능
- 보호적 기능
- 경쟁적 기능

### 상표의 기능과 사용

#### (1) 자타상품식별기능

: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기능

#### (2) 출처표시기능

: 동일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동일출처로부터 유래함을 나타내는 기능

#### (3) 품질보증기능

: 동일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



### 상표의 기능과 사용

#### (4) 광고선전기능

: 구매자에게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명성을 전파하는 동적 기능

#### (5) 재산적 기능

: 무형의 재산권으로서의 기능 등

#### (6) 보호적, 경쟁적 기능

: 상보 보유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경쟁자의 제품과 경쟁하는 기능 등



### 상표의 사용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의 각 행위를 말한다.

- (1) 상품,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2) 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유통 행위
- (3) 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광고 행위
- (4)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

### 상표의 기능과 사용

• 상품,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유통 행위



• 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광고 행위



•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







동아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

## Chapter.

기출 5회 (상표등록요건)

1. 인적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Cf) 특허청직원 - 상속,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 외국인의 경우 - 상호주의

2.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뉨.

#### 1. 적극적 요건 (식별력을 가질 것!)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함.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하며,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있음. [ 이하의 상표 만으로 ~]

① 상품의 보통명칭
[예: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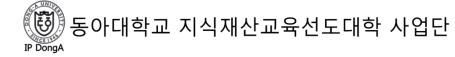
② 관용상표 (예: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 ③ 성질표시적 상표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생산방법, 시기 등
-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예: 금강산, 백두산 등)
-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 123, ONE, TWO, ß 등)
- ①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내용	<b>ଔ</b>	구분
보통명칭	ASPIRIN, 카우치, 카페라떼	제33조 제1항 제1호
관용표장	NET, 레포츠, 데코시트	제33조 제1항 제2호
성질표시표장	안경나라, 큰글성경, YASISI	제33조 제1항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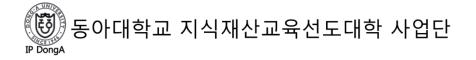
내용	Й	구분
현저한 지리적 명칭	서울, 부산, 광주	제33조 제1항 제4호
흔한성, 흔한명칭	김가네, 박씨, LEE	제33조 제1항 제5호
간단하고 흔한표장	K2, A6,	제33조 제1항 제6호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MR.토스트,	제33조 제1항 제7호



#### 2. 소극적 요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비록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 하는 경우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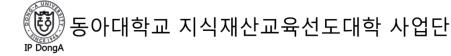
-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IMF, WTO 등)
-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예: 양키, Negro 등)



-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예: YMCA, 적십자 등)
- ④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 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DJ, YS, 한전, 주공 등)
- ①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⑧ 기타 내용



- ⑨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⑩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저명상표) 예) 타이레놀, 애니콜, 그랜저
- ⑪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②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③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예) 볼트형상
- ④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 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 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예) 보르도



등록 불가능한 상표의 사용에 의한 등록

- (1)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도 출원 전 사용결과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에는 등록가능(33조 제2항)
- (2) 단,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상품에 한하여 등록되며, 유사범위의 상표 및 상품에까지 등록될 수는 없음
- ex) 새우깡 과자, 서울우유 우유, 재능교육 - 학습지, 우리은행 - 은행업



# Thank You for Listening

